

의안번호	2213822
의 퇴 인	김정호 의원
회 답 일	2026. 4. 7.
추계번호	25A5790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안 제6조), ②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설치(안 제7조), ③통계의 작성 (안 제86조)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억 4,000만원(연평균 1억 8,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안 제6조)	250	—	—	—	—	250	50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안 제7조)	18	18	18	18	18	90	18
통계의 작성 (안 제86조)	600	—	—	—	—	600	120
합계	868	18	18	18	18	940	188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종합발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운영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7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제1항)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사업시행자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그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리고 재생에너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항)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제4항)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안 제8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추진지원단 설치 등)	(제1항)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항) 지원단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항)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4	안 제9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	(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두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리·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변경지정, 지정해제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사업시행자 선정 및 선정취소 지원 4. 제6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리기본계획 수립·운영 5.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6.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입주기업의 유치 및 투자 지원 7.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8.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9.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2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항) 지원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5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개발 등)	(제1항)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도시연계 사업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5.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제2항)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계획이 수립·변경되어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계획의 수립·변경·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동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 제12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지정·고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조성할 계획으로 반영한 산업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6	안 제19조 (인·허가등의 의제)	(제1항) 사업시행자가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결과에 따른 협의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13.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16.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1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2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9.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30.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1.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3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36.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가 3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4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2.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4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4.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4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중 에너지개발구역으로의 지정 (제2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항)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6항)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7	안 제25조 (산업기반시설등의 지원)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구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 인프라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8	안 제27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 내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9	안 제35조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제1항) 다음 각 호의 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2.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로 허가·협의·신고 등이 된 농지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임차인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항) 제1항에 따른 참여대상 주민의 범위 및 관련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10	안 제37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항)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내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제2항)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자로부터 국·공유재산을 임대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3항)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의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1	안 제38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가 분산형전력망지구 내에 송전·변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2	안 제39조 (친환경 전력 사용 전환 및 계통 안정화에 따른 지원)	(제1항)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자가 경제적인 수준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정부는 제1항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감축 비율 2. 전력계통 효율성 제고 및 안정화에 대한 기여도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제2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13	안 제41조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신의 부지 내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4	안 제42조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지원)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전력망을 설치하거나 공공성, 안정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다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5	안 제43조 (재생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1항)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자원안보 요소를 고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6	안 제44조 (조세 감면에 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및 입주기업 근로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관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재량규정
17	안 제4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재량규정
18	안 제46조(임대전용 용지의 공급)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산업시설지구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전용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용지의 공급·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에 따른다.	재량규정
19	안 제47조 (부담금 감면등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다만, 산업시설구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제5호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20	안 제48조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제1항)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실현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분야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기술개발사업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21	안 제49조 (보육기반 확충에 관한 특례)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22	안 제51조 (교육재정 지원의 특례)	(제1항)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3항)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3	안 제55조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우대할 수 있다.	재량규정
24	안 제56조 (의료기관 지원의 특례)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입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25	안 제62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	(제1항)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원센터가 된다. 다만, 지원센터는 산업시설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하며, 관리권자는 승인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 관리권자가 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러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항)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항) 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위치 및 면적 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수, 에너지, 통신 및 교통 시설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에 한함) 7.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항) 제6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로 구분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 8 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원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26	안 제7 2 조 (특별회계의 설치)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등)		
27	안 제73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1항)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차입금 6.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의 토지를 이용한 수익금 및 제18조에 따른 수익금 7. 회계 자금의 용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제2항)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용지의 조성 비용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송전·변전설비 구축·운영 비용 4. 친환경 전력 사용 전환 및 계통 안정화에 따른 지원, 입주기업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지원 등의 비용 5.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제7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용자 8.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제3항)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28	안 제78조(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대책 등)	(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재량규정
29	안 제79조 (산업단지 태양광 발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전사업 지원 등)	다)은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 발굴,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2항)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30	안 제83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대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2항)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한 자에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가중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설치용량에 따른 가중치 차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9조에 따른 금융상·재정상의 지원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재량규정
31	안 제84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단 및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재량규정
32	안 제86조 (통계의 작성)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2항)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재생에너지자립도 시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	-
2	안 제7조(재생에너지자립 도시위원회)	○	○ (일부추계)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회의수당에 대하여 추계함. 다만, 실무위원회의 경우 구성 기준과 개수, 위원의 정수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회의수당 등 재정지출 증가분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3	안 제8조(재생에너지자립 도시추진지원단 설치 등)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추진지원단을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를 둘 경우 인건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설치될 추진지원단과 센터의 규모, 임차비, 신규 채용 인원, 예상 사업비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4	안 제9조(재생에너지자립 도시지원센터)	×	
5	안 제15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개발 등)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산업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도록 할 경우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개발 비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6	안 제19조 (인·허가등의 의제)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아서 안 제19조제1항의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함에 따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감소를 유발할 수 있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수수료·사용료 감면 대상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수입감소분의 추계가 불가능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25조(산업기반시설 등의 지원)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 인프라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구체적 입지, 기반시설 조성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중 ‘RE100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내역사업을 통해 RE100 산업단지 내 핵심 기반시설(도로, 용수, 폐수, ESS 등)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설계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table><tr><td>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코드)</td><td>사업개요</td><td>2026년 예산 (백만원)</td></tr><tr><td>산업단지환경조성－RE100산업 단지 기반시설구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33－305)</td><td>RE100 산업단지 내 핵심 기반시설(도로, 용수, 폐수, ESS 등) 구축을 위한 타당 성 조사비용 및 설계비용 등에 대한 지원</td><td>2,000</td></tr></table> 자료: 산업통상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코드)	사업개요	2026년 예산 (백만원)	산업단지환경조성－RE100산업 단지 기반시설구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33－305)	RE100 산업단지 내 핵심 기반시설(도로, 용수, 폐수, ESS 등) 구축을 위한 타당 성 조사비용 및 설계비용 등에 대한 지원	2,000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코드)	사업개요	2026년 예산 (백만원)							
산업단지환경조성－RE100산업 단지 기반시설구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33－305)	RE100 산업단지 내 핵심 기반시설(도로, 용수, 폐수, ESS 등) 구축을 위한 타당 성 조사비용 및 설계비용 등에 대한 지원	2,000							
8	안 제27조(「환경영향평가 법」의 적용 특례)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연 2회 이하로 조사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입지가 선정되지 않았고 구체적 지구 조성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재정소요 산출이 불가능함						
9	안 제35조(발전사업에 대 한 주민참여)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로 허가·협의·신고 등이 된 농지의 임차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금융지원을 실시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지원 대상, 단가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0	안 제37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 전력망지구 내에 소유한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업시행자의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임대료 감면 대상, 금액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11	안 제38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 내 송전·변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및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지원 대상,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중 ‘RE100산업단지 구축지원’ 내역사업을 통해 RE100 산업단지의 발전인프라(전력망) 설치, 첨단기업 투자유치, 정주요건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음 <table><tr><td>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코드)</td><td>사업 개요</td><td>2026년 예산 (백만원)</td></tr><tr><td>산업단지환경조성－RE100산업 구축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33－305)</td><td>RE100 산업단지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산업단지 및 발전 인프라 설치, 첨단기업 투자유치 및 정주요건 마련 등을 지원</td><td>20,880</td></tr></table> 자료: 산업통상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코드)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백만원)	산업단지환경조성－RE100산업 구축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33－305)	RE100 산업단지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산업단지 및 발전 인프라 설치, 첨단기업 투자유치 및 정주요건 마련 등을 지원	20,880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코드)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백만원)							
산업단지환경조성－RE100산업 구축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33－305)	RE100 산업단지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산업단지 및 발전 인프라 설치, 첨단기업 투자유치 및 정주요건 마련 등을 지원	20,880							
12	안 제39조(친환경 전력 사용 전환 및 계통 안정화에 따른 지원)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용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자가 경제적인 수준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가용 전기설비 중 재생에너지설비를 부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전력망을 설치하거나 공익의 실현						
13	안 제41조(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4	안 제42조(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지원)	×	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정부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 지원 대상, 금액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15	안 제43조(재생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지원)	×	
16	안 제44조(조세 감면에 대한 특례)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및 입주기업 근로자 등에 조세를 감면할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계법령에 규정된 조세지원 등 해당자에 적용될 감면 항목을 알 수 없고, 감면 대상자 수 또한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17	안 제4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지원 방법, 대상, 금액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불가함
18	안 제46조(임대전용용지의 공급)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산업시설지구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전용용지로 공급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2항¹⁾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 지원을 실시할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국고 지원 대상,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불가능함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9	안 제47조(부담금 감면등 에 대한 특례)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기부담금 등을 감면할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감면 항목, 대상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20	안 제48조(기술개발사업 의 지원)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분야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1	안 제49조(보육기반 확충 에 관한 특례)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원과 학교 설치 지원, 교육 경비 보조, 정규교육과정 외 과정의 지원 등을 실시하고,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부지의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비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22	안 제51조(교육재정 지원 의 특례)	×	
23	안 제55조(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	
24	안 제56조(의료기관 지원 의 특례)	×	
25	안 제62조(재생에너지자 립도시의 관리)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산업통상부 및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경우 관리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관리 비용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26	안 제72조(특별회계의 설 치 등)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정부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7	안 제7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	현 시점에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계가 불가능함
28	안 제78조(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대책 등)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업무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수요 발굴,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금융·재정적 지원 등을 우대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소요 비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29	안 제79조(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	×	
30	안 제83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	
31	안 제84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산업통상부장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와 경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임기제공무원의 필요 여부, 채용 규모, 직급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32	안 제86조(통계의 작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①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②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안 제7조), ③통계의 작성(안 제86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 심사와 사업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은 추계 첫 해에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2027년에 2억 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유사 연구사례로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산업통상부, 2022년, 1억 3,300만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국토교통부, 2018년, 1억 7,000만원),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새만금개발청, 2011년 2억 9,000만원),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전라북도, 2023년 3억 4,600만원) 등이 있음
 - 동 계획은 법 시행 첫해인 2027년에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안 제6조)	250	-	-	-	-	250	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안 제7조)

- 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은 회의 참석수당으로 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000만원(연평균 1,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구성) 위원회는 국무총리인 위원장 1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6인, 18인의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본 추계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총 6인으로 가정함
 - (회의 횟수) 분기당 1회씩 연 4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단가) 기획예산처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에게 1회 대면회의시 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25만원을 지급함
 - 위원회의 위원 수는 결원 없이 유지되고, 회의 개최·참석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재정소요) 회의 참석수당은 민간위원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9,000만원(연평균 1,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위원회 회의수당: 민간위원 수(18명) × 회의 횟수(4회) × 수당 단가(25만원/회) = 연 1,800만원

2)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자료 인쇄비, 참석 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대면회의 1회에 25만원으로 가정(서면회의의 경우 15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3]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안 제7조)	18	18	18	18	18	90	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통계의 작성(안 제86조)

- 통계의 작성에 따른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하고,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7년에 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유사 조사로는 ‘에너지총조사’(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7억 8,700만원), ‘국가산업단지통계조사’(산업통상부, 4억 8,200만원) 등이 있음
 - 제정안에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

[표 4] 통계의 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통계의 작성 (안 제86조)	600	—	—	—	—	600	1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assembly.go.kr